

2023 경기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 편성 관련

- 경기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강사비와 초빙 강사비(연수 강사 등)는 중복 지급 불가
- 강사 본인 혹은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 주강사 김OO 본인이 대표로 있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매 ⇒ 불가
- 회의식비 및 다과비는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가능하며, 1인당 20,000원 내외 책정 가능
- 교통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증빙서류(영수증, 출장보고서)로 지출 가능

집행 관련

-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2024년 집행 불가함
- 반드시 별도의 사업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예산 집행
-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신고
 -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필수(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위택스)
 - 원천세 납부는 기관별 1개의 통장을 통해 가능하며, 기관이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 타 통장에 원천징수 세액을 송금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통장을 통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내역 증빙 필수
 - 소득세 신고 관련

구분	기준액(기준: 월)	세부정의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소득세 (2019.1.1. 기준 _2023년 변동없음)	○ 125,000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125,000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예술강사 사례비(수업개발비/회의참석비) 집행
 - 사례비 지급 시, 교육연극 협의록(수업개발비) 또는 모임일지(회의참석비) 작성 필수
 - 수업개발비와 회의참석비는 **각 10회 이하**로 편성 및 집행 권장
- 회의식비 집행
 - 회의식비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회의록 제출 필수(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
- 기타 예산 항목별 증빙서류 목록 및 작성 서식은 지원금 교부 시 안내 예정

정산 관련

- 정산 절차 전산화 (예정, 변동 시 별도 안내)
 - 종이 영수증 X, 모든 지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사업 메일로 제출

-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기관)에 있음
- ※ 지원신청 단계에서는 총 지원금액과 간략한 예산계획을 지원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 ⇒ 선정 후 지원 결정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 및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교부신청(공문)
 - ⇒ 경기문화재단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사후에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2023 경기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 예산 편성 불가 항목

※ 편성 불가 항목 및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단체 및 개인)에 있음

편성 불가 항목	세부 내용
자산 취득성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PC, 프린터 등) ○ 기관 비치용 도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상설 운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프로그램 교육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력 및 교육 참여자 대상 행사 관련 상품권, 상금 등 지급 금지 (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 식사비, 매회 회의비, 단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 회의비의 경우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만 편성하고,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함
주류 및 유흥성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구매는 불가하며, 유흥성 업소에서 집행 불가함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 지출(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일시, 장소, 참여 인원,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미제출 시 인정 불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인건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내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비 등) 지급 불가 ○ 사업 수혜자 또는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교차 지급 불가 예) 강사비를 받는 예술강사에게 초빙 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유관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 (추후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교육 외 용도가 더 큰 교육 기자재를 불가피하게 임차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예: 영상 아카이빙용 촬영 장비 등)

2023 경기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 예산편성 지침

목	세목	편성지침 및 유의사항								
<p>※ 아래의 목/세목은 예시이며, 기관별 기준에 맞게 나누어 편성 가능</p> <p>※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항목은 직접 추가하여 편성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한 항목인 경우, 심사 또는 교부 과정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p> <p>※ 예산 항목별 집행 증빙서류 목록 및 사업 운영 서식은 지원금 교부 시 안내 예정</p>										
인건비		<p>○ 인건비는 아래의 세목별 지침과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 예산편성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기관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p>								
	강사비	<p>○ 협력수업 진행 시 수업시간에 따라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 : 시간당 50,000원 - 블록 수업 형태를 권장하며, 1블록은 2차시(2시간)로 구성 ※ 1블록(2차시) 내 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수업개발비	<p>○ 예술강사-교사 간 수업 개발을 위한 협의 진행 시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 : 회당 100,000원 ※ 수업개발비는 총 10회 이하로 편성 권장 								
	회의참석비	<p>○ 예술강사-교사 사전 만남 또는 예술강사 모임 진행 시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 : 회당 100,000원 ※ 회의참석비는 총 10회 이하로 편성 권장 								
	초빙 강사비 (연수 등)	<p>○ 연수, 특강 등 진행 시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빙 강사비는 강사비(협력수업 예술강사)와 중복 지급 불가 - 초빙 강사로 지급 기준표 ※ 등급별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5%;">등급</th> <th style="width: 85%;">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0/시간 대학 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 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0/시간 대학 부교수급 이상, 주요 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시간 대학 전임강사 이상, 주요 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미만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이에 준하는 기타 경력자</td> </tr> </tbody> </table> <p>※ 위 기준표는 2시간 기준이며, 2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50% 추가 적용 (예시: 3등급 해당 강사/3시간 연수 → (100,000×2h)+(50,000×1h)=250,000원)</p>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50,000/시간 대학 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 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150,000/시간 대학 부교수급 이상, 주요 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100,000/시간 대학 전임강사 이상, 주요 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미만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이에 준하는 기타 경력자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50,000/시간 대학 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 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150,000/시간 대학 부교수급 이상, 주요 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100,000/시간 대학 전임강사 이상, 주요 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미만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이에 준하는 기타 경력자									
심사 및 자문료	<p>○ 심사 또는 자문회의, 멘토링 진행 시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참여 인력에 지급(내부 참여 인력은 지급 불가) - 심사수당 및 자문료 지급 기준표 ※ 등급별 기준은 초빙 강사비와 동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5%;">등급</th> <th style="width: 45%;">지급금액</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등급</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200,000/시간</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2시간 초과 : 기준금액의 150% - 5시간 이상 : 기준금액의 2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시간</td> </tr> </tbody> </table> <p>※ 위 기준표는 2시간 기준이며, 2시간 초과 시 우측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예시: 1등급 해당 전문가/3시간 멘토링 → 200,000×150%=300,000원)</p>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시간	- 2시간 초과 : 기준금액의 150% - 5시간 이상 : 기준금액의 200%	2등급	3등급	100,000/시간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시간	- 2시간 초과 : 기준금액의 150% - 5시간 이상 : 기준금액의 200%								
2등급										
3등급			100,000/시간							

	보조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행사 또는 정산 보조 시 편성 가능 - 보조 인력(단기용역) : 1인당 91,880원(1일 최대 8시간)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1,485원) 적용 																																																																																																																
	강사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수업 진행 시 지급 - 강사 거주지와 교육 장소 간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길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왕복 거리 계산 - 단, 왕복 거리 30km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table border="1" data-bbox="507 510 1412 952"> <thead> <tr> <th colspan="2">30-100km</th> <th colspan="2">101-200km</th> <th colspan="2">201-300km</th> <th colspan="2">301-400km</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0-40</td> <td>7,000</td> <td>101-120</td> <td>12,000</td> <td>201-220</td> <td>24,000</td> <td>301-320</td> <td>44,000</td> </tr> <tr> <td>41-60</td> <td>8,000</td> <td>121-140</td> <td>14,000</td> <td>221-240</td> <td>28,000</td> <td>321-340</td> <td>48,000</td> </tr> <tr> <td>61-80</td> <td>9,000</td> <td>141-160</td> <td>16,000</td> <td>241-260</td> <td>32,000</td> <td>341-360</td> <td>52,000</td> </tr> <tr> <td>81-100</td> <td>10,000</td> <td>161-180</td> <td>18,000</td> <td>261-280</td> <td>36,000</td> <td>361-380</td> <td>56,000</td> </tr> <tr> <td>-</td> <td>-</td> <td>181-200</td> <td>20,000</td> <td>281-300</td> <td>40,000</td> <td>381-400</td> <td>60,000</td> </tr> <tr> <th colspan="2">401-500km</th> <th colspan="2">501-600km</th> <th colspan="2">601-700km</th> <th colspan="2">701km 이상</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r> <td>401-420</td> <td>64,000</td> <td>501-520</td> <td>84,000</td> <td>601-620</td> <td>104,000</td> <td>701-</td> <td>124,000</td> </tr> <tr> <td>421-440</td> <td>68,000</td> <td>521-540</td> <td>88,000</td> <td>621-640</td> <td>108,000</td> <td></td> <td></td> </tr> <tr> <td>441-460</td> <td>72,000</td> <td>541-560</td> <td>92,000</td> <td>641-660</td> <td>112,000</td> <td></td> <td></td> </tr> <tr> <td>461-480</td> <td>76,000</td> <td>561-580</td> <td>96,000</td> <td>661-680</td> <td>116,000</td> <td></td> <td></td> </tr> <tr> <td>481-500</td> <td>80,000</td> <td>581-600</td> <td>100,000</td> <td>681-700</td> <td>1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km 이상이어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교통비 지급 시 증빙서류에 주민등록상 주소, 포털지도 길찾기 캡처본 첨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진행비	교육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 재료비 기준단가 : 100,000원 / 1학급 기준 ※ 산출예시(6학급인 경우) : 100,000원×6학급=600,000원 ○ 프로그램 관련 행사 진행 시 소규모 발생하는 소모품 구매 비용 등 																																																																																																																
	용역료/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업체 용역 계약 및 진행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용역 진행 가능 ※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대행하는 용역 진행은 불가 ○ 교육공간 대관 / 기자재 임차 등 - 기자재는 임차를 권장하며,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집행 가능 																																																																																																																
	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진행 시 소규모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비 등 																																																																																																																
	다과비/회의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기준단가는 1인 한도액을 의미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다과비 및 회의식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재단 지원금으로 편성 필수) - 3천만 원 미만 : 282,000원 -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336,000원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등 사업 홍보 경비 ※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을 수령 가능한 정식 광고 집행 시 편성 가능 ○ 실 견적을 반영하여 집행 및 예산 절감 노력 필요 																																																																																																																